#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 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 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 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 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 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3100381] http://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3-05-24] www.altong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11-28] 28.com

[]

# 알통떡강정

# 정보공개서

(주)알통컴퍼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 (주)알통컴퍼니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 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 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1로 104번길 24

대표전화번호: 02-1644-1909 대표팩스번호: 051-714-2410 가맹사업부 전화번호: 1644-1909

# 목 차

Т	가매보브이	일반 현황
1.	10 <del>-</del> T-1	2L L6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	자의 부담
٧.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_ 0 _ + = 1	
V <b>Ⅲ</b> .	교육・훈련(	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신설)
	. •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 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 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 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 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	지	주 소					
	알통떡강정		부산시 북구 만덕1로 104번길 24					
	법인 설립	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주)알통컴퍼니	2013.10	).11	2013.10.21	황선미	02-1644-1909		051-714-2410	
	법인등록번호	19421	11-0218314	사업자등록번호		609-86-15338		

※가맹본부 사업은 개인사업자 알통컴퍼니 (대표:황선미)로부터 2013-11-01 양수양도 받아 (주)알통 컴퍼니 (대표:황선미)로 가맹본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부산시 북구 만덕1로 104번길 24			
임원	황선미	알통떡강정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황선미	02-1644-1909	051-714-2410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부산시	북구 만덕1로 104	번길 24		
임원	황중섭	알통떡강정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급건			황중섭	02-1644-1909	051-714-2410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알통떡강정]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알통떡강정 OO점	-
상 호	알통떡강정 OO점	-
상표(서비스표)	CALLES MATTON TOSHER WAS	서비스표 등록번호: 401489881
그 밖의 영업표지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2,106,247	1,452,853	653,394	6,888,938	57,737	35,896
2022년	2,149,269	1,419,894	729,374	6,880,848	83,426	75,979
2023년	2,238,112	1,211,359	1,026,753	8,780,471	331,882	297,378

- 그 근거자료는 별지와 같습니다.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재무상황과 동일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영업표지	연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정원표기	인프	매출액	상한	하한			
	2021년	6,888,938	-	-			
알통떡강정	2022년	6,880,848	-	-			
	2023년	8,780,471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전인어구	기급	선 역기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황선미	대표이사	2013.11.~ 현재	㈜알통컴퍼니 대표이사	경영총괄
관련 임원	황중섭	이사	2013.11.~ 현재	㈜알통컴퍼니 이사	관리총괄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심	상근	비상근	식천ㅜ(형)
2023년 12월 31일	2	0	12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해당사항 없습니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ALL MANAGES	상표권 서비스표 (해당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2018.05.10 출원 2019.06.17. 등록	출원 제40-2018-0063363 등록 제 41-1489881	황선미	2029.06.17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 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田.** 가맹본부의 [알통떡강정] 현황

1. [알통떡강정] 을 시작한 날: 2012년 1월 1일

# 2. [알통떡강정] 연혁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알통컴퍼니	H 퍼니 알통떡강정		2012.01.01.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타워26길5
큰 6 십 시 시	로 6 기 6 6	황선미	2013.10.31.	(에이스하이-엔드타워 703호)
(주)알통컴퍼니	통컴퍼니 알통떡강정		2013.11.01. ~	경남 창원시 가주로164
(1/2011)	로 이 기 10 10	황선미	2021.11.04.	70日70년717112104
㈜알통컴퍼니	알통떡강정	황선미	22.11.05 ~ 현재	부산시 북구 만덕1로 104번길 24

## 3. [알통떡강정] 업종

영업표지	업종				
알통떡강정 -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치킨	닭강정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알통떡강정]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ગે બે	2	2021.12.31.		2022.12.31.			2023.12.31.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60	160	0	145	145	0	133	132	1
서울	6	6	0	3	3	0	3	3	0
부산	12	12	О	10	10	О	5	5	О
대구	1	1	0	1	1	0	0	0	1
인천	2	2	0	3	3	0	3	3	0
광주	12	12	0	12	12	0	12	12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16	16	0	17	17	0	16	16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17	17	0	14	14	0	14	14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1	1	0	1	1	0	1	1	0
충남	1	1	0	1	1	0	4	4	0
전북	1	1	0	1	1	0	1	1	0
전남	5	5	0	3	3	0	3	3	0
경북	29	29	0	26	26	0	23	23	0
경남	53	53	0	50	50	0	45	45	0
제주	4	4	0	3	3	0	2	2	0

### 5. 바로 전 3년간 [알통떡강정]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59	39	0	38	9	160
2022	160	8	0	23	5	145
2023	145	3	0	16	2	132

# 6. [알통떡강정]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알통떡강정]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sup>④</sup>	2023년 말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sup>1</sup> 매출액(	-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비고 <sup>⑤</sup>
, ,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sup>©</sup> 3.3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m <sup>2</sup> 당	하한	면적 3.3m <sup>2</sup> 당	
전체	132	118,142	10,829	363,708	40,493	19,867	1,155	
서울	3	117,055	10,602	203,457	22,568	60,128	4,009	
부산	5	124,098	13,548	194,559	19,456	74,077	7,408	
대구								
인천	3	96,897	13,996	121,442	14,541	81,124	13,091	
광주	12	133,380	13,882	280,527	51,005	41,875	4,885	
대전								
울산	16	119,874	11,284	225,694	24,802	35,259	4,148	
세종								
경기	14	121,090	10,398	194,845	21,412	52,785	3,820	
강원								
충북	1	100,922	12,520	100,922	12,520	100,922	12,520	
충남	3	73,819	8,568	132,398	12,136	42,665	5,939	1곳산정제외
전북	1	100,875	12,609	100,875	12,609	100,875	12,609	
전남	3	112,535	10,651	151,899	15,454	65,261	6,506	
경북	23	89,958	7,334	262,848	28,263	19,867	1,155	
경남	45	131,610	11,882	363,708	40,493	22,226	1,695	
제주	2	124,067	13,122	134,053	14,260	114,080	12,288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파악한 가맹사업자 원가분석 자료에 따르면 물품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50%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산하였습니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가맹점은 1년으로 환산하여 산정하였고,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 매장 1곳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 연간평균 매출액은 133개 매장을 대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8. [알통떡강정]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알통떡강정]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 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sup>①</sup>	평균 영업기간 <sup>②</sup>
2023	132	2,021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알통떡강정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1 =1 61	)] ~- /=J ~]		7 ,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서울강북지사	서울시 도봉구 해등로26길20 109,110호					
	대표자	대표전화번	호	관리	가맹점수		
서울시 강북	이영재	010-3359-2	220		4		
시호기 정치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2.02.01. ~ 2024.1.31	0	0		0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소				
	서울 강남지사(경인지역)	서울시 강	동구 천중로 :	35길 99-5	5 4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	점수		
서울시 강남	이용진	010-8868-5202		5			
(경인지역)	기메보보이이 ᅰ아기기	크레기 미기기위	ગો <u>નો</u> ો ગો ઇક સ	레 거 기 취	가맹금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수렁권한		
	2023.11.01.~2025.10.31.	0	0		0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경기 남부지사	경기도 -	만현로 110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거리는 11日	조명제	031-898-3652			6		
경기도 남부	기메보보이이 ᅰ아기기	기메거 미기기취	ചിചിറിം	레 거 기 취	가맹금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	세설전안	수렁권한		
	2023.06.01. ~ 2025.5.31.	0	0		0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경기 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387-18					
경기도 북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배근	010-8766-8	8270	10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	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2.02.20. ~ 2024.2.19.	0	0		0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호남지사(국제식품)	광주광	역시 풍영철길	로 188-6	57	
	대표자	대표전화번	<u>ই</u>	관리	긔 가맹점수	
전라도	김기채	062-382-0107		18		
신다도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2.03.12.~2024.02.11	0	0 0		0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대전/충청지사	경	남 양산시 양측	양산시 양주로16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미고/초치ㄷ	박시홍	062-382-0107		3		
대전/충청도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	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07.09.~2025.07.08	0 0			0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알통떡강정]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알콩떡강정 가맹사업에 사용된 금액은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구분 <sup>①</sup>	기간 <sup>3</sup>	지출 비용(단	· - - - - - - - - - - - - - - - - - - -	비고 <sup>④</sup>	
1 2	/ T.C.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
합계	2023.1.1.~2023.12. 31	70,101	70,101	0	가맹본부 100%부담
광고	2023.1.1.~2023. 12.31	70,101	70,101	0	가맹본부 100%부담
판촉	2023.1.1.~2023. 12.31	0	0	0	가맹본부 100%부담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기업은행	녹산 중앙지점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12-3	051-832-0170 1566-2566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기업은행 창구에 계약 체결일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예치 시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알통컴퍼니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 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 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 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알통떡강정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지사)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지사)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3,300	계약 체결 후 예치	영업 개시 전까지 계약 해지	영업 개시 후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교육비	없음				없음
총계	3,300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1,000	계약체결일	-가맹금, 물품대금미지급 -계약종료 후 조치 미이행 (영업의표지 철거 원상회복)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계약의 종료일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이행 보증금 으로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으로 상환
총 계	1,000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가 맹 비	3,300
교 육 비	0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없음)	1,000
합 계	4,3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22,000	2,200	-계약시:50% -중도금(공사시작후7일이내):30% -완공시(완공 3일전): 20%	미 공사시	33.3㎡ 기준 (10평 기준)
간판,후드 (LED간판 별도)	자율 선택	변동	-	공급전	미 공사시	
주방기기/ 집기/의탁자	, 가맹 본부	8,800	-	공급전	미 공급시	33㎡ 기준 3.3㎡ 늘어날 때마다 700천원 추가부담(보통형 , 고급형의 경우 800천원)
최초 공급 상품 비용	㈜알통 컴퍼니	3,500		공급전	미 공급시	별첨1 참조
총계		34,300	3,430	-	-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매장의 형태에 따라 투자금은 변경될 수 있고 인테리어는 직접 시공 할 수 있으며 직접 시공 시 가 맹본부의 철저한 감리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위 표의 금액은 추정한 것으로 지불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표에는 전기증설, 철거공사, 화장실, 소방시설, 실외공사 등은 포함되지 않았고 별도의 비용이 부담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사업 희망자	-가맹희망자의 책임으로 가맹점의 점포 입지를 선정한다 가맹본부는 유동인구, 교통량, 입지의 특성, 업종별 특성 등의 상황에 따른 점포선정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알통떡강정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부산광역시장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 입금시 일시납부 하여야하며, 분납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 분담금	㈜알통컴퍼니	50% 가맹본부 50% 가맹사업자	2주일 전	실시 전	실시 후	브랭드이미지 상품광고 가맹점모집+ 상품광고
		100%가맹본부 0%가맹사업자	_	-	-	가맹점모집 광고시
판촉분담금	㈜알통컴퍼니	협의	2주일 전	실시 전	실시 후	판촉시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자율선택	협의	협의	실시 전	실시 후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자율선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WI.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 에 대한 지원
지연이자	㈜알통컴퍼니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부산광역시장 -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재제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회	문의: 외식사업부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년 1회	문의: 외식사업부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지급해야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단 양도 시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는 받아야 합니다. 양수자는 필요시 가맹본부의 교육을 받을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 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양도인의 가맹사업자와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 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 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알통떡강정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알통컴퍼니에 지급 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단, 양도 시 가맹본부의 서면동의는 받아야 합니다. 양수인은 계약이행 보증금(부가세없음)을 양수 3일 전까지 ㈜알통컴퍼니 가맹본사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은 필요시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일체 사용 할수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 하여 필요한 비용은 가맹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알통떡강정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물품구입 및 임차 현황 아래 리스트 참조)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부산광역시장 -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부산광역시장 -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알통떡강정]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sup>⊕</sup>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sup>②</sup>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sup>®</sup>	경제적 이익의 내용 <sup>®</sup>	비고
-				
계				

#### ※해당사항 없습니다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부산광역시장 -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크리스피치킨			
알통떡강정(순,중,매)			
데리킹			
슈프림 양념			
슈프림 간장			
화이트 어니언			
깐풍치킨			
땡초치킨			
갈릭스위트			
뿌링고			
새우튀김			
고구마튀김			
한입고추튀김	당사가 제시하는 상품		
오징어튀김	또는 서비스의 적절한		
야채튀김	품질기준		
당면만두	· (용량,조리메뉴얼 등)을		
잡채말이	· 준수하여야 하며,	1회 위반: 구두 경고	
유탕고구마		2회 위반: 2회 이상	
멘보샤	브랜드의 통일성 및	서면 시정요구	
치즈볼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떡	위하여 가맹본부에서		
고구마	지정한 상품 및		
만두	서비스만을 판매하여야		
근위튀김	합니다.		
케이준감자			
맛감자			
떡볶이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1회 위반: 구두 경고	
다른 가맹점사업자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록 하고 있으며,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sup>①</sup>	권장가격(단위: 원) <sup>2</sup>	가격 통보 방법	비고 <sup>③</sup>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3.상품.용역.거래상대방,가격 결정 1)가맹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용역의 판매 제한 항복에 기재	가맹본부가 통보한 가격	홈페이지 공지, 유선 서면통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돈이침 어조 베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닭강정 및 치킨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알통떡강정	해당사항 없음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sup>①</sup>	설정방법 <sup>②</sup>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 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 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알통떡강정'영업 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알통떡강정]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알통떡강정]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sup>2</sup>	가맹점과의 구분 <sup>③</sup>
-	-	-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 ※해당 사항 없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 오프라	긴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알통떡강정]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6조 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 지 아니한 경우	6조 2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6조 2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6조 2항
○ [알통떡강정]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 우	6조 2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6조 2항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1)일반적인 해지사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 35조 1항
산에 압류, 경배 신청이 된 경우	35조 1양
○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없이 가맹 본부의 영업표지가	35조 1항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하는 경우	332 18
○ 가맹사업자의 위법 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 판매에 손해를	35조 1항
끼친 경우	002 18
○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35조 1항
상표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영우	-
○ 가맹사업자가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35조 1항
○ 가맹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35조 1항
○ 가맹사업자의 채무가 계약이행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또는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35조 1항
○ 가맹사업자의 또는 가맹사업자의 직원이 교육규정에 의한 교육의 이수를 해태	
	35조 1항
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 가맹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 지급에 필요 증명서류,	35조 1항
또는 확인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35조 1항
○ 가맹사업자가 감독 및 시정요구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35조 1항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사업자가 품질기준과 영업관리 기준을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35조 1항
○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 추가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 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5조 1항
○ 가맹사업자가 상품자체를 조달하여 용도외 사용하거나 이를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35조 1항
○ 가맹사업자가 물품공급 비용을 미결제 한 경우	35조 1항
○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을 타가맹점에 공급 또는 경쟁업자에	
게 공급한 경우	35조 1항
○ 자점 매입하거나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35조 1항
○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5조 1항
○ 가맹사업자가 운영 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5조 1항
○ 가맹사업자가 정당한 시설의 교체나 보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5조 1항
○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35조 1항
우	·
○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했을 경우	35조 1항
○ 가맹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	·니 35조 1항
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35조 1항

### (2) 즉시 해지사유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 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ㅇ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15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15조 1항

<ul><li>전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수 없게 된 경우</li></ul>	15조 1항
<ul> <li>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li> </ul>	15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 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5조 1항
<ul> <li>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li> </ul>	15조 1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15조 1항
<ul> <li>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li> </ul>	15조 1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15조 1항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서면 합의를 거쳐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 계약서에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최신, 6에게 있는 6부 무성 세구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화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재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 영권 이전 완료	문의: 관리팀 (02-1644-1909)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가맹점 운영을 위해 정한교육을 받아야 하며 가맹점 운영 전까지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 가맹계약과 동일한 가맹비를 추가로 당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 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본수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본부가 승인한권리의무	서면통보→본부승인 → 교육수료	
업무위탁	불가능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가맹사업자가 계약 존속기간 중 가맹본부의 허락없이 본인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와 동종 업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가맹본부와 동일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자 율	월 26일 이상	문의: 관리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질병의 발생과 치료 개인사정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영업을 중단하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sup>①</sup>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sup>②</sup>	비고 <sup>③</sup>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분기	본사 관리팀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분기	본사 관리팀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분기	본사 관리팀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알통컴퍼니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sup>①</sup>	광고	부두	감비율	분담 절차 <sup>④</sup>	비고 <sup>©</sup>	
1.5	성격 <sup>②</sup>	본사부담 <sup>③</sup>	가맹점부담	한 남 실사 :	H J/ -	
	브랜드이 미지광고,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50% (가맹점 수로 균분)	별도 절차 없음	대중매체 광고	
광고	가맹점모 집광고+ 상 품광고	광고비의 50%	50% (가맹점 수로 균분)	일도 설시 없음 -	명절, Day 이벤트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	1	
개별 행사	र्वृ	생사에 따라 달라짐 (별도 공고)		행사계획공고→가맹점부담액제시 →가맹점의 행사참여결정→행사 종료 후 최종 분담금 확정	개별행사,광고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19조(비밀유지의무), 제20조(경업금지 의무) 및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규정을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1) 제19조(비밀유지의무), 제20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금이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를 위반할 경우 위반 1일 당 금이십만원을 위약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 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10평기준,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3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_	
사업 설명·상담	- 전화 상담 - 사업 내용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정보공개 사항 검토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정보공개서제공 14일(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후 계약	IV.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계약체결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계약체결 14일전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이전의
가맹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	D-30	부담(1~4를 참고하시기
가맹금 예치	-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	D-30~29(1일)	바랍니다. )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8~27(1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6(1일)	
점포집기, 주방기기입고	- 점포집기, 주방기기, 초도물품 입고	D-15~10일 (5일)	
인테리어 공사	-공사 실시, 기기, 물품 입고	D-16~15(1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4~3(1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 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 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 내부 자율 분쟁 협의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변호사, 가맹거래사로 구성된 외부 전문 업체(가맹분쟁지원센터, 홈페이지: <a href="http://www.fcmc.kr">http://www.fcmc.kr</a>)의 자문을 통하여 분쟁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 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 정되는 경우 이위생이나 안전 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 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정상적인 영업에 현 지장을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 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 축공사에 일체 보고 되는 일체 기맹 사업의 무관하게 가맹점사 공사 를 실시되다 비용은 제외)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O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	○점포환경 3년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차임없는 부의 책임없는 부의 착임없는 사유료(계약약 로 (계약약) 지급 (계약약) 우 바임 (기가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 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 부터 90일 이 내, 총 부담액 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 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 의 40%)	
--	---	--

#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영업팀 (051-611-3177)
가맹점사업 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영업팀 (051-611-3177)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sup>①</sup>	주요 내용 <sup>②</sup>	지원조건 <sup>③</sup>	지원기간	지원내용 <sup>④</sup>	비고 <sup>⑤</sup>
조기 안정화 자금지원	가맹점 오픈시 조기안정화를 위한 자금지원	매출이익이 월400만원 이하인 경우	오픈일로부터 1년 간	400만원 - 월 매출이익	
매출부진 경영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판매촉진을 위한 경영지원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맹계약기간	경영 컨설팅 제공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알통떡강정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sup>①</sup>	기한	비고 <sup>②</sup>
개점 전 교육	회사 소개 음식 가공 등	이론, 실습	개점 전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이론, 실습	수시	필수 교육
수시 교육	신 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이론, 실습	필요시	필수 교육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알통떡강정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1일	없음(1인 기준)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별도계획	별도 통보	신 메뉴 출시 등
수시 교육	별도계획	별도 통보	필요시 실시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 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기한 내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공급중단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불참에 대한 당사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신설)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대구	알통컴퍼니 대구지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구전설로 1 (연호동,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sup>[</sup> 상기 대구지점은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의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7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934,794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 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 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u>http://franchise.ftc.go.kr)에서도</u>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